

떨렁한 이태원, 한미 분위기 대변

한미간의 냉랭한 분위기는 주한미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영관급 장교 1명이 칼에 찔려 숨지고 미군 가족 2명이 폭행당하자 외출자제 명령을 내렸고 17일부터는 주말에 헌병 3명을 이태원파출소에 상주시키고 있다.

이태원의 잦은 미8군 소속원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미군의 독극물 무단방류사건을 둘러싸고 미8군사령관의 서울시장 사과방문이 취소되면서 여론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한미간의 기류변화는 8월 2, 3일 열리는 행정협정 개정협상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들끓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현행 행정협정을 미일, 미독 행정협정 수준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측은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에 제출한 개정안 초안이 공개돼 한국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고 그 와중에 미8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까지 터지자 입장정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KBS-TV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한국 국내법이 일본 국내법과 다르고, 일본 국내법이 독일 국내법과 다르기 때문에 행정협정은 이런 차이점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은 전통 우방으로서, 그리고 전략적인 맹방으로서 한미관계 현안과 두 나라 사이의 견해 차이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행정협정 개정협상에 대비해 외교통상부는 송민순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관련부처 과장급 등 15명의 협상팀을 구성하고 자료검토와 협상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협상팀 명단은 한국 정부가 아직 통보받지 못했지만, 행정협정 주무부처인 국방부 차관보나 부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주한 미대사관 등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피의자문제 현격한 입장차

현행 한미행정협정의 쟁점은 형사 피의자의 인도시점과 환경조항 신설,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규정, 부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등이다. 이중 한국 여론이 가장 주시하는 것이 형사 피의자의 인도시점과 환경문제다.

현행 행정협정에는 미군 피의자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한국측에 신병인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미국 대표의 입회없이 수사나 재판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형사 피의자 인도시점을 검사의 공소시점으로 당기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의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공소시점을 양보하는 대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범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대사관측은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난 4월17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미행정협정 공청회에 제출한 문서를 읽어보면 미국측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문서를 작성한 로버트 마운츠 한미행정협정 간사와 주한미군 법무참모 울드릭 휘오리2세 대령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범죄자를 소추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미국법에서는 미결구금은 피의자의 재판출석을 보장하거나 다른 중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한국법에서도 증거인멸, 도주우려, 재범우려의 조건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결구금이 훨씬 더 만연하고 거의 일상적이다.

한미 양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면 재판 전까지 신병을 누가 유지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도적 문화적 차이때문에 주한미군이 일반적으로 신병을 유지하지만 주한미군은 모든 피의자들이 한국의 수사과 재판에 출석시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행정협정이 양국의 사법관행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일뿐 한국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1세기 한미관계의 분수령

미국측은 개정안 초안에서 환경보호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스워스 대사는 KBS-TV와 특별회견에서 “협상에서 한국측이 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미8군의 포름알데히드 무단방류 사건)은 행정협정에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맹독성 물질의 취급 및 폐기에 관한 분명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규정과 합의가 있다 해도 이번 일처럼 인간의 실수에 따른 피해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형사관할권 분야는 미일 행정협정 수준으로, 환경보호 분야는 미독 행정협정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측의 태도를 볼 때 일방적인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국 협상팀의 역량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측 고위 관계자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합리적인 방식’을 강조하는 것도 한국인이 지나치게 감정에 의존하고 정작 협상에서는 냉정하고 철저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행정협정은 1967년 2월9일 발효된 이후 1991년 2월1일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하는 등 한차례 개정됐지만 불평등 논란이 계속돼 1995년 11월30일 재개정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1996년 9월10일 7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주한미군 문제가 한국민의 대미감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행정협정개정 협상이 21세기 한미관계에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6) 너무나 다른 미군천하!

(한겨레21 2000-07-13)

미군은 독일·필리핀·일본에서도 점령군으로 우월적 권리를 행사했으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거나 주둔했던 주요국가로는 우리나라말고도 독일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나라마다 주둔 미군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인식은 모두 달랐다.

<독일> 독자성 인정하고 우호적 관계 유지

주한미군의 존재를 둘러싼 한국에서의 논란에 대해 독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성격이 한국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미군은 비록 점령군으로 들어왔지만 독일의 확실한 우방으로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동독에 주둔했던 소련군도 마찬가지였다. 외국군 주둔에 따른 주권침해나 인권시비도 전혀 없었다. 언론 역시 미군에 대해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우호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편이다.

이처럼 미군과 독일 국민들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된 것은 미군이 독일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점령자’의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 국민은 이들을 협력자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배경은 종전 이후 미·영·프랑스·소련 4개국에 의한 독일 점령의 역사에서 비롯된다. 2차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영국·프랑스 연합군과 소련군이 베를린에 ‘점령군’으로 입성하면서 미군은 독일에 주둔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은 주둔군 지위협약 등을 통해 중요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모두 독일쪽에 넘겼다. 마살플랜 등 미국의 지원이 독일의 경제부흥에 건인차가 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에서 미군의 존재가 논란을 빚는 핵심적인 이유가 외교노선 등 한국 정부의 독자성이 제약받았

기 때문이라면, 독일에는 그런 측면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90년 통독 이후 '점령군'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적어도 독일에서는 미국과 소련보다는 영국과 프랑스가 더욱 문제였다. 미국은 독일의 통일을 지지했으며, 나아가 통일독일이 나토의 일원으로 잔류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당시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와 별인 담판에서 4개 국군의 동시철수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양해받았다. 결국 94년 소련군은 완전철수했으며, 미군은 베를린에선 철수하되 독일 다른 지역에 나토군의 일원이란 자격으로 계속 주둔하게 됐다.

<필리핀> 미군 떠나자 경제적 이익 들통

지난해 3월19일 필리핀 마닐라의 미 대사관 앞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필리핀 정부와 미군이 새롭게 맺는 미군주둔시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에 반대하는 이날 시위는 지난 1991년 미군이 철수한 지 8년 만에 열린 반미시위였다. 그 8년 동안 필리핀은 모처럼 미국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에스트라다 정부가 지난해 의회에서 VFA를 통과시키면서 이 협정이 미군 주둔당시 SOFA(미군주둔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일반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필리핀 정부는 경제부흥과 군의 현대화를 이유로 이 협정을 벌였고, 협정에 따라 현재 7개 지방에 군사훈련장을 만드는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는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13개 지방에 미군이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며 99년간(2046년까지) 주둔한다는 조약을 맺었다.(이 조약은 66년 다시 보완돼 미군의 주둔기간은 1991년까지로 50년 단축됐다) 이 조약에 따라 필리핀에 들어선 미군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는 중국과 옛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로서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 49년 이후 중국혁명,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까지 중국과 옛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로서 필리핀 미군기지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와 함께 미군의 중요한 방위축을 이뤘다.

이들 미군기지는 필리핀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미군의 핵무기 유입가능성 우려도 나왔고, 기지 주변의 매춘문제와 기지에서 버리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불거졌다. 주둔 미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협정에 의해 미군들의 범죄가 보호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컸다. 80년대 접어들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같은 사회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90년에는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미국에게 주둔협정대로 91년에 철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듬해인 91년 미군은 마침내 수빅만과 클라크기지에서 철수했다.

철수 당시 미국은 아시아 방위전략을 위해 필리핀에 10~20년 더 주둔하기를 희망했다. 미군이 철수하면 경제적, 정치적 지원이 중단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미군 철수 이후 두 기지는 경제자유지역으로 설정돼 미군주둔 당시보다 더욱 많은 고용창출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수빅의 경우 투자유치가 늘어나 해마다 두배씩 고용창출 효과가 커질만큼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의 반미항전이 지속돼도...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일본은 요즘 미국 못지 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지난달 22~24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중국·한국방문에 맞춰 3국 수뇌들이 주한미군문제를 어떻게 거론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을 기울였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하나의 운명체로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해빙은 주일미군 및 미-일동맹의 존재이유를 되물게 만들어 미국·일본의 동북아전략을 전면 수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교두보로서 2차대전 패망 이후 미-일 안

보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4만5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만9천명이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다.

주일미군은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기지에 대한 권한을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인정받고 있다. 미군범죄문제는 피의자가 공무중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재판권이 미국에, 공무중이 아니면 일본쪽에 귀속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군주둔에 들어가는 다양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주둔 미군에 대한 일본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은 <한겨레21>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그것과 비슷하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안보를 위해 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듯 일본 국민들 역시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미·일 세계전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에 대한 반발 역시 한국과 비슷한 양상과 논리로 전개된다. 한국에서 미군문제가 기지주변 주민들의 피해호소로 불거지듯 일본에서도 미군철수 요구의 진원지는 오키나와다. 그리고 미군으로 인한 문제가 결국은 오키나와의 문제로만 여겨지기 일쑤다. 안보를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 피해를 호소하며 철수를 주장하는 기지 주변 시민들의 요구 사이의 간극을 메울 묘안이 없기는 한국과 일본 두나라 모두 마찬가지다.

7) 反美운동과 미국측의 분노 内幕 6·25 50주년을 앞두고 누가, 왜 反美감정을 부추기는가

(월간조선 2000년 7월호)

작년 9월 미국 AP통신이 첫 보도한 「노근리 사건」 이후 최근까지 駐

韓美軍(주한미군)과 관련한 사고들이 시리즈를 이루듯이 거의 매달 터져 나오면서 한국내에 反美감정이 고조되어 왔다. 작년 11월엔 1968, 69년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에 美 정부의 요청과 지원 아래 枯葉劑(고엽제)가 뿌려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상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월5일 주민 300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했던 경기도 파주 미군기지내 폭발물 소동은 미군이 7시간이나 늦게 한국측에 사실을 통보하고 미군이 주민들 몰래 먼저 떠난 것으로 보도되어 反美감정을 들끓게 했다. 한국 언론들은 그런 미군을 「비겁자」로 비난했고, 미군측은 한국 언론이 오히려 사실을 오해한 것이라면서 불만과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2월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美2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매 카시 상병(22)은 4월28일 한국 법정에 출두하기 직전 도주했다가 8시간 만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韓美행정협정(SOFA) 규정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韓美간 외교현안이 되어 있다.

5월8일에 일어난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의 美 공군 사격장(쿠니사격장) 실폭탄 투하사건은 점증되어온 反美감정을 촉발시켰다. 이를 계기로 일부 단체와 대학생들이 가서, 駐韓美軍 철수주장을 공공연히 퍼면서 美 대사관과 미군기지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한동안 잠복했던 이같은 反美감정의 확산은 특히 6월13일부터 시작된 남북頂上회담과 6·25 전쟁 50주년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駐韓 미국대사관과 駐韓美軍 관계자들은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이 反美감정으로 번지는 배후와 원인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6·25 전쟁 50주년 행사 참석차 오는 수천명의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부정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내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일부 駐韓美軍들은 한국 국민들이 보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말한다.

이런 모든 표면적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지난 50여년간 友邦(우방)을 넘어 同盟(동맹)의 관계를 유지해온 韓美간의 관계는 튼튼한 것인가. 아니면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 양국간의 관계

도 이제는 변해야 하는가.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어떤 의미인가. 兩國의 정부 고위인사와 軍의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이들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듣는다.

8) [음지를 찾아서] 불평등 한미행정협정 피해자들

(주간한국 2000-02-23수 20:17)

“짓밟혀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복수(58)씨는 요즘 부쩍 한숨이 늘었다. 1997년 4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조중필(당시 22·홍익대 전과공학과)씨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러 이태원에 갔다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재미교포와 미 군무원의 아들에 의해 살해됐다.

용의자로 지목돼 살인죄로 기소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23)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또다른 용의자인 미 군무원의 아들 아더 페터슨(23)은 검찰의 실수를 틈타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아들은 살해당했는데 범인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크고 작은 집회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온 이씨는 맥이 빠지고 말았다. 검찰이 지난해 8월 23일 페터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제때 연장하지 않아 3일간 공백이 생긴 사이 페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12월 23일에야 한 언론사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이씨는 그동안 검찰에 페터슨에 대한 재수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재파악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었다. 이씨는 담당검사를 국무유기협의로 고소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혼이 되어 구천을 해멜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만약에 용의자들이 한국인이었

다면 당국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처리했겠냐”며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용의자들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적거렸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미군범죄 피해자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군무원이 관련된 범죄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바로 한미 행정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22조)을 비롯해 미군 범죄 피해자의 배상신청(23조),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권(17조) 등을 제약하고 있어 한미 행정협정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협정 개정작업을 벌였지만 1996년 미국 측의 일방적인 중단 통고 이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미군 및 미 군무원의 범죄는 모두 50,092건이다. 그러나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10만건은 훨씬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연평균 2,000여건에 이르던 미군 범죄는 1992년 10월 미군 케네스 마클이병의 윤금이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연평균 700~80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미군 범죄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미군의 자체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군 범죄 피해자들은 불평등한 협정뿐만 아니라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주위 사람의 선입견 등으로 2중, 3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주한미군 범죄 근절운동본부 오진아 간사는 “미군 관련 범죄는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주변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온 사람들인데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남아 있어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피해보상은 더욱 어렵다. 피해액을 최종적으로 미군측이 결정하는데다 전적으로 미군의 잘못이더라도 한국정부가 25%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택시운전을 하던 공석일(43)씨는 지난해 4월 미군에게 강도를 당한 사건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 저녁 11시쯤 이태원에서 택시를 탄 미군 2명이 갑자기 공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2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공씨는 우측 눈 언저리뼈가 부서져 인공뼈를 이식하는 등 3개월간 병원신세를 졌다. 보상을 신청했지만 1,2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중 병원비와 일실 손실을 제외하면 보상금은 77만원, 합의금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안받으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전세금을 담보로 병원비를 충당해 돈이 급한데다 변호사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조언뿐이었다. 공씨는 사건 후유증으로 시력이 악화해 택시운전을 그만두고 사글세로 옮기는 등 생활형편도 크게 나빠졌다. 공씨는 “내가 배운 것은 없지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폭격소리에 돌아버릴 지경

미군과의 갈등은 형사사건에서 차츰 환경파괴와 기지나 훈련장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자리잡은 미 공군의 쿠니 사격장이 대표적이다. 쿠니 사격장은 1952년 농섬을 해상 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해안지역과 일대 농작물을 지속적으로 징발, 확대하면서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밤까지 폭탄투하 기총사격 등이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다.

폭탄투하 지점인 농섬은 크기가 3,000평에서 지금은 1,000평 안팎으로 줄어들었을 정도다. 쿠니 사격장은 오키나와, 괌, 필리핀 등 극동지역 미 공군까지 출장훈련을 할 정도로 지형과 기후 조건이 최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사격장 주변의 매향리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상당부분 잃어버린데다 소음과 오폭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오폭과 불발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200여세대에 불과한 매향리에서만 지금까지 30여명이 자살하고 학생들의 폭력성향이 두드러지는 등 극심한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1987년 민주화 바람에 힘을 얻어 매향리 주민의 사격장 이전, 피해보상 운동이 시작됐지만 10년이 넘도록 해결기미가 불투명한 상태다. 오히려

점거농성, 반대집회를 주도한 젊은이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방부는 1997년 미군측의 강력한 반대와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사격장 이전보다는 사격장에서 5km 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생계대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 우리정부 태도에 더 분노

주민들은 1998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20억원의 피해보상 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승소할 경우 이를 근거로 사격장 폐쇄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매향리 미 공군 폭음피해 대책위원회’ 전만규(44)위원장은 “한국군의 사격장도 이렇게 주민을 사격장 주변에 방치하지 않는다”며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군과 한국 정부가 주민을 불모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흥분했다.

전씨는 미군보다는 한국 정부와 공무원의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씨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 악천후에도 계속되던 훈련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미군측에 매일 동향을 알려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전씨 등 주민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매향리 주민들은 “매일 방송사나 신문사 기자들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한다. 송용희, 김명원기자 songyh@hk.co.kr

9) [태평로칼럼] 한-미 갈등, 두고볼일 아니다....

(주간조선 2000-06-011605호)

2차 대전 직후 미국은 나토 유럽국가들에게 고마운 수호신이요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콧대 높게 군림하다가 「어글리 아메리카」라

는 불청객 대우를 받으면서 철수 당하고 말았다. 미국은 지금 유럽에서의 전철을 한국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주한미군은 왜 우리 나라에 주둔하는가? 서로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유럽에 주둔할 때에는 미국의 이익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1969년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이익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다고 선언했고, 그에 따라 카터는 주한 미군 모두를 철수시키려고까지 했다. 이렇듯 미국은 그들의 이익이 사라지면 철수한다. 역으로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이익이 한국에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미국의 이익이 아시아로 옮겨져 있다. 미국은 점증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에 10만 대군을 유지해야 한다. 그 대부분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에서 어글리 아메리카로 추방된다면 일본도 자존심을 내세워 뒤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불청객 대우를 받게 된다. 미국의 입지 변화는 곧 한국의 입지 변화를 뜻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입지 변화는 현실 변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주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이 억지력을 얻는다면 미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 효과는 미국의 이익이요, 그 부수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억지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마다 4억달러의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가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해마다 30억달러에 상응하는 토지세, 건물세, 세금 등을 면제받고 있다.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도 지금쯤은 재협상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당위성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만 주고 있다.

● 미국은 우호 위한 최소한의 성의 보여야

한국인들의 불만과 항의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미국 내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들이 한국에서는 기지주변 이웃들에게 오페수를 방류하고 있다. 살인범의 신병을 인도해다가 탈출시키고, 미군의 범죄를 싸고도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군은 한국군보다 10배 이상이나 넓은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땅조차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우호관계를 위해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려 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매향리 및 노근리 사건 등은 어찌 보면 미군을 비난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요란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미군의 「신사도」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사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물론 SOFA 자체에도 시정돼야 할 내용들이 꽤 있다. 그러나 현재의 SOFA 규정을 갖고도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의 자세 여하에 따라 많은 것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의 반미 감정이 고조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군 당국 및 한국 정부의 게으름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반미 운동권 사람들이 벌이는 캠페인도 한 요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경계하면서도, 많은 우익 인사들, 심지어는 장군 출신들마저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한 미군의 콧대 높은 꼴 좀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꾸념한다.

미국은 지금 단지 게으름과 시대착오적 행동 때문에 그들 편에 서있던 사람들의 입지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한참미 양국 정부가 공동 팀을 만들어 이 문제를 연구하려는 성의만 보인다면 해도 급류를 향해 치닫고 있는 지금의 한참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만원 (군사평론가)

3. 인터넷 자유게시판

1) [새움터] SOFA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참여연대게시판 작성자: 김주영 2000-07-27)

안녕하세요. 저는 기지촌 여성운동단체 새움터에서 일하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소파 개정 협상을 앞두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새움터와 평화인권연대, 전여대협 등에서는 개정 협상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의 인권 보호 조항의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지촌 여성의 살인사건과 피해가 더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매항리 사건, 대구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등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얻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지촌 여성에 대한 미군의 범죄는 우리들의 기억에서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고 있다.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 매춘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가부장적 논리로 이러한 문제들이 묻혀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1월 동두천에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범인에 의해 살해당한 기지촌 여성 신차금씨, 9월에 살해당한 새움터 직업재활센터 직원 이정숙씨, 올해 2월 이태원 미군전용클럽에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김성희씨, 3월 의정부에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범인에 의해 살해당한 68세의 기지촌 여성 서정만씨 등 작년과 올해에 걸쳐 모두 4명의 여성이 기지촌에서 살해당했다. 그 이전에도 윤금이씨, 최주연씨, 이기순씨 등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기지촌 여성들

이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등 미군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 사건들 모두가 미군이 범인이거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실제로 검거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외에도 기지촌의 매춘여성에 대한 편견, 포주와 클럽 업주에 의한 사건 은폐, 사회적 무관심, 한국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기지촌 여성의 살인 사건은 대부분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특히, 미군이 범인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 작년 1월 살해당한 신차금씨 사건의 경우 체내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 검사 결과 외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염색체 구조가 발견되었으며, 피해자가 발견된 방의 벽에서는 "창녀"라는 뜻의 미국 속어인 "Whore"가 써있었다. 작년 9월에 살해당한 이정숙씨 사건의 경우에도 유력한 용의자였던 동거 미군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군 수사대(CID)의 수사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새움터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알리바이에 몇 군데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미군과 한국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최근의 서정만씨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전날 미군 용의자를 본 목격자도 있었고 사건 직후 몽타주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현재 계속되는 기지촌 여성 살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군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형사 관할권 문제의 개정이 시급하다. 미군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 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범인 인도 시기 역시 기소 직후에 바로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주둔군 지위 협정의 내용에 대한 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기지촌 문제에 대한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춘이 기지촌에서는 버젓이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군 범죄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 혼혈아동에 대한 미군 당국의 양육 책임 등이 협정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지촌 여성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매춘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남성 고객에 대한 처벌 강화, 착취 고리의 단절,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기지촌의 성산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기지촌 여성의 문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협정의 개정과 동시에 기지촌 여성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

- 1)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직업재활 교육, 전업 지원 등 사회복지적 지원을 위한 비용 분담
- 2)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 및 AIDS 감진 실시 (인권 침해 조지가 있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성병 검진의 폐지)
- 3) 미군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은 혼혈아동에 대한 미군 당국의 양육비, 교육비 지원
- 4) 기지 반환 및 철수시 기지 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 대책 포함
- 5) 미군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범죄 예방 교육 실시
- 6) 매춘 금지 명문화 및 미군을 대상으로 매춘 예방 교육 실시

새움터, 평화인권연대,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 서울대학교 여성문제동아리 한울타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2) 참여연대는 SOFA와 관계없나?

(참여연대게시판 작성자: 김봉남(test@hanmail.net) 2000-08-03)

TV에선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선지 꾸준히 미군들이 한강에 독극물 버린 내용과 매향리 사건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당연하고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부터 SOFA협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독일수준으로 개정이 어려울것 같다.

오기나와에서 G8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때 TV화면을 보면 회담열리기 며칠전부터 오기나와전체가 술렁이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당일에는 오기나와 시민들전체가 대규모 집회를 가지기까지 하지않았는가?

근데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연합하여 운동하지 않고있다.

국회의원 선거때처럼 뭉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미군들은 알고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져버리는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만 벌면 된다는것을...

나는 분노한다.

나는 애국자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언제 또 기회가 있겠는가? 물론 기회는 또 온다. 하지만 그 동안 또 다른 미군들의 범죄가 펼쳐져도 우리는 속만 꿰이며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이나 동두천에서, 또 그의 미군들이 생활하는 가까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매춘부가 잔혹하게 살해되고도 보상은

커녕 적절한 처벌을 받았는가 말이다.

지금 미국의 대표자가 왔을때 우리나라의 반미분위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궤기하자!!

나는 결코 미국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같은 땅에 살면서 사는 조건이 너무나 불평등하게 다르다.

이 땅의 주인은 나인데 왜 그들이 대접받고 사는가?

우리는 반미분위기를 조성해서 잠깐 우리의 이익을 취하면 된다.

북한을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SOFA협정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는 물론이요, 거기서 녹을 먹고사는 관리들과 시민단체들까지 싸잡아 병신이라고 매도하게 될 것이다.

미군들이 한강에 독극물 방류사실을 먼저 국민들에게 알린것은 녹색연합이라고 하나, 결코 참여연대도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사는 앞날을 위하여 연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일어서야 한다.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TV카메라와 신문기자들을 끌어들이 전국에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

참여연대가 먼저 시작하라.

나도 분명 그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주제토론은 지금시기에 당연히 SOFA개정문제라야 하지않나?

3) 무식한 국민여러분 눈높이 낮은 국민분들, 이민가지 말고 이 걸레를...

(참여연대계시판 작성자: 야심가 2000-08-27)

국민여러분 이런 최악의 삶의 질의 환경에서 체코의 벨벳혁명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고 마피아정치기득권자들의 노예로 고분고분 잘 살아가시는군요. 이게 나랍니까? 미국으로부터 Sofa협정에 있어 저 아프리카 최빈국

보다 못한 나라로 취급당하고 ...

의약분업과 이런 최악의 삶의 질과, 총체적 난국의 해결 해법은 오로지 단 하나, 국민이 직접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국가체제의 새로운 개념의 헌법을 온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체코의 벨벳혁명을 한 실천전략으로 응용하여 말입니다. 마피아정치를 제도적으로 영원히 해체시키지 않고는 일제 식민지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한번씩 삼풍백화점 같은 상징적인 붕괴를 격기도 하고 민간인 사찰도 당하고, 수 조원의 국민혈세가 정치선거자금으로 탕진되고, 농민들이 자살하고, 제2, 제3의 IMF사태가 오는 경험을 계속하고 싶으시거든 제가 호소하는 국가적 과업을 외면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지만 정말로 답답하고 우매한 국민여러분들이여! 작금의 나라상황은 정치마피아에 의한 식민지배 상태라는 걸 곰곰히 되새겨보십시오.

4) 주한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 시대의 요구입니다.

(참여연대개혁통신 작성자: 참여연대 정책실 간사 김박태식 2000-06-29)

평음과 오염의 죽음의 땅, 매향리

대통령님,

매향리를 들어 보셨는지요.

최근 매향리에서는 연일 수백의 사람들이 모여 미군의 폭격장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향리는 미 공군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되어 150 데시벨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평음과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지옥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전반기 주민대책위원장이 구속을 아랑곳 않고 폭격을 알리는 황색 깃발을 찢었겠으며 오죽 분노했으면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맨손으로 폭격장 철조망을 철거했겠습니까? 매향리 폭격장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복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러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장식한 2000년,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천년을 만드는 그 시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제2, 제3의 매항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배경에는 주한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이 있습니다.

주한주둔군지위협정과 미군범죄

현재의 SOFA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대전협정에 이어 1967년에 체결, 1991년에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으로서, 주권침해의 요소가 담겨있는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33년 전 낡은 체제에서 만들어진 주권침해와 인권유린,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협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주한미군의 범죄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매카시 상병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 협정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매카시는 최초에는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다 여를 거절하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후 경찰 조사에서는 "성행위 도중 흥분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판결에서도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많은 미군 범죄의 경우 항상 최초의 진술과 다음 진술이 틀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속수사불가라는 현 SOFA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주한미군은 피의자를 인도 받은 후 알리바이를 조작하거나 진술 자체를 조작한다는 의구마저 가능한 부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우리 땅

또한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미군기지에서 오·폐수를 바다로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에서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측정 한 결과 BOD가 최고 13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0ppm이하 폐수 종말처리장 30ppm이하를 감안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

니다. 우리 땅을 반환할 때 환경파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SOFA 4조에 의해 미군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강산을 마구 짓밟을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누구의 땅입니까?

전국 8천5백여 만평(자산가치 12조6천억 원)의 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6조는 주한미군에게 한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인천신공항에 무상임대를 요구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요구만 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민항기가 미군 기지 활주로를 사용하면 활주로 사용료를 냅니다. 미군이 우리 땅을 공짜로 사용하고 우리는 그 땅을 사용하면서 돈을 내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SOFA의 불평등은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명문화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자주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까지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방위비 분담금, 무기통제권 등 무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SOFA인 것입니다.

전국민적인 여론이 SOFA 개정의 힘입니다.

이렇듯 반주권적인 반인권, 반환경의 SOFA를 개정하라는 전국민적인 목소리가 커져왔기에 지난 95년 개정협상이 시작되었다가 97년 11월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되었으며 최근 협상 재개가 논의되어 6월 말 개정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SOFA 협상이 재개되면 쟁점이 돼 온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과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SOFA 점진적 개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SOFA의 문제는 단순히 주한미군 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변화된 시대에서의 주한미군의 위상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시각에서 총체적으

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인 대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국민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하지 않고 밀실에서 처리한다면 이는 커다란 후과를 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제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미국의 개정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만, 국민들은 이러한 내용은 커녕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을 필두로 수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주권을 옹호할 곳이 지켜내는 바람직한 외교를 기대합니다.

5)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중요합니다

(참여연대개혁통신 작성자: 미상 2000-08-03)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무더운 여름도 이제 그 절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무덥게 느껴지는 올해 날씨처럼 우리를 무덥게 만드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시행 첫날부터 혼란을 겪고 있는 의약분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외래처방약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게다가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동네 의원 또한 문닫은 곳이 적지 않아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마음마저 커다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준비부족으로 이런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독이 불가능한 처방전을 써주거나 새벽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원의 처방전을 써주는 등 다분히 고의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힘겨루기의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고 약한 일반 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회 내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일이 하나가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이익집단간의 갈등이기는 하지

만, 정부의 일차적인 과제는 다름 아닌 이러한 갈등을 사회적 정의의 시각에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의약분업 시행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세심하게 이러한 갈등들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자세로, 힘없고 약한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정치적인 고려에서, 혹은 해당 집단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이뤄지는 일관성을 결여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신뢰받지 못하며,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부에게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단비 같은 한 가지 소식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대한 개정협상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의 SOFA를 미군이 다른 나라와 맺은 SOFA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불평등한 SOFA로 인해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겪어 왔던 고통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협상에서는 형사재판권을 전면 보장하여 미군의 범죄행위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권이 국제법상 고유한 국가의 권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번 독극물 사건으로 불거진 환경조항, 혼혈아들의 인권, 미군기지내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요한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SOFA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인권이 결코 작지 않게 훼손되어 왔으며 매항리나 독극물 방류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왔다는 점입니다. SOFA 개정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왔던 만큼 이번 협상에서 기대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평등한 지위협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개혁통신에는 쓴 소리로 국민의 정부가 내걸고 있는 생산적 복지 조차 거스르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복지관련 부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번 개각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및 복지관련부처의 장관은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물을 발탁해야 할 것입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6) 매항리 폭격장 폐쇄와 SOFA 전면 개정

(참여연대개혁통신 작성자: 김용한 2000-07-13)

대통령님,

먼저 매항리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이 황원탁 외교안보수석과 한 시간쯤 대화한 뒤 결론지어 한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쓴소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다 필요 없다. 진상 조사도, 손해 배상도 필요 없다. 폭격장만 폐쇄시켜라. 미국 이전도 반대다. 그런 폭격장 옆에선 미국 사람도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매항리에선 "사람 죽이는 게 무슨 안보고, 통일이냐? 폭격장 폐쇄하라!"는 소리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순세력의 선봉 때문이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지난 50년 간 미군 폭격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수십 명이고, 난청이나 불면증·신경쇠약·정신착란 같은 병으로 고생하다 자살한 사람도 수십 명입니다. 매항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50년입니다, 50년. "일제 때도, 인공 때도 살아봤지만, 목숨 잃지 않았고, 어장 빼앗기지 않았는데, 도와주러 왔다는 미군 때문에 목숨 잃고, 불구자 되고, 황금어장마저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매항리 주민들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한맺힌 삶을 접한 전국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가 <매항리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단일 조직을 만들어 뒤늦게나마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 정부'가 가면을 벗더군요. 원천봉쇄는 물론, 할머니·할아버지 가리지 않고 방패로 찍고, 돌로 까고, 군홧발로 짓밟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문정현 신부님이 스무살짜리 전경들에게 매일

얻어맞으십니다. 시위대를 담 밑으로 몰아붙이고 쾅쾅 소리나게 돌도 던집니다. '다리 몽땅이 부러뜨린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마와 머리를 열댓 바늘씩 꿰매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씩이고, 두 달 동안 중경상을 입은 사람이 2백 여명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 때도 이렇지 않았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오키나와에서 "민중의 안보를 위한 오키나와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70여 평화운동가들이 모여 2박3일 꼬박 토론한 끝에, '나고시 헬리포트 건설 중단과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첫 번째 요구안으로 정한 결의문과 한미 두 나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채택했습니다. '전만규 위원장 즉각 석방, 매항리 폭격장 즉각 폐쇄,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이 그 내용입니다. 곧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연금 생활하실 때 일본 대표 자격으로 동교동 자택을 찾아뵈었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박사, 필리핀대학교 월든 벨로 교수와 클린턴 미대통령의 동창생 평화 운동가 조셉 거슨 박사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홍콩에서도 '아시아 센터'가 세계 1백여 나라 평화 운동 단체에 "한미 두 나라 대통령에게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요구하자"라는 내용의 '긴급 제안'을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주소와 이-메일, 팩스 번호까지 공개했더군요. 지난 5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밀레니엄 포럼"에서도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매항리는 이제 세계 평화 운동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눈앞에 두신 분으로서 매항리 때문에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위대가 폭격장 철조망을 걷어냈다는 보고 받으셨죠? 최중수 신부를 비롯한 14명이 미군 폭격의 표적인 농성에 들어갔다는 보고는요? 그 때 우리는 미대사관과 주한미군사령부, 한국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있으니 폭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폭격과 사격을 계속하더군요. 최 신부는 그 때 정말 죽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하고,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섬에 대고 그렇게 폭격을 해대는 까닭이 뭘까요? 한반도 평화나 자

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라고요? 택도 없는 소립니다.

단언하건대 무기 판매와 신무기 제조 실험을 위해섭니다. 매향리폭격장 관리 책임자가 록히드 마틴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 정계에 뇌물을 바치고 무기를 팔다가 일본에서 '록히드 스캔들'을 통해 마각의 일부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소련이 무너진 뒤 전쟁마저 잘 안 일어나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 겁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 분위기 때문에 남한 무기 판매도 전처럼 쉽지는 않을 테죠. 매향리에서마저 폭격을 못하게 되면 공장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수 공장 문 닫지 않게 하려고 매향리 주민을 실험용으로 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매향리 폭격장을 폐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도 록히드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통일된 뒤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미국이 통일을 방해할까봐 그러시는 거려니 좋게 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반민주적이거나 머리가 나쁘기로 소문난 역대 대통령 누구도 그런 소린 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 안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6조에 따라 미군은 '무기한 주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조약의 파기를 통고하고 1년이 지나야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통일 이후'라는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꼭 말씀을 하셔야겠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의 유효 기간을 다른 나라들처럼 5년이나 10년으로 고치는 걸 포함해서 전면 개정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치려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미국의 반대 때문에 안 되는지 대통령께서 알아서 기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50년을 참았습니다. 10년 더 못 참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옛 소련이 맺었던 '조-소 군사조약'도 10년이잖습니까?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년 자동 연장되지요. 지금 SOF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오만방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

국의 인종우월주의 때문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예속적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통일된 뒤에도 매향리 주민들이 폭격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그 통일은 누구와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요? 부디 이 쓴소리가 약이 되어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7) SOFA 한번 개정해 봅시다.

(경실련게시판 작성자: 우울한 한 국민이 2000-04-28)

경실련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슬프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다 이렇게 한자 적어봅니다. 우리 언제까지 무식하고 못 배운 미군들의 범행과 하다못해 비자 받기위해 구걸하다시피(비자 받는 것도 한미행정협정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웃 일본과 비교해봐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의 국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할말은 하고사는 싱가포르만 봐도...

잘은 모르지만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경제와 중요한 외교현안들에서부터 기타 대부분의 분야에서 절대적이고도 많은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우리 정부도 오만한 미국에 대해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나마 미 행정부에도 당당하게 내심 받기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결과야 어떻든 사람마다 생각들은 다르겠지만 총선시민연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파장이 컸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울해야만 합니까?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써....

8) SOFA는 어디갔나?

경실련게시판 작성자: 불평등 2000-08-03

SOFA협정이 불평등하다고 헌법소원까지 했다만~

중요한건 SOFA협정이 분명고 일본이나 독일수준으로 우리나라도 개정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방송사에서는 며칠전부터 SOFA개정문제를 떠는데 아마도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협정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하기 위함이 아닌가한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뭘하는 건지??

국회의원선거때처럼 다함께 연합해서 행동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야 말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나서고 국민들 반미감정을 여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의 오키나와처럼 대규모 집회도 가지고 미국측으로 부터 유리한 입장에 서야한다. 독극물 한강방류때도 오키나와처럼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나면 우리역시 미국 대사나 미국대통령한테 사과 못받을 것도 없지 않은가. 불리하게 개정된 다음 나중에 가서야 병신이이 등신이니 서로 손가락 길 하며 비난하면 뭐 하나? 일본이나 중국과 어로협상때도 우리정부의 관리들은 무능함을 한껏 보여주지 않았나 말이다. 나는 애국자도 아니고, 결단코 미국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땅에 사는 국민으로서 우리보다 그들이 대접받는 현실이 안타까워서이다.

각 시민단체들의 게시판에는 의약분업에 관한 글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인 SOFA도 중요하다.

입다물고 있지 말고 시민단체가 해야할 일을 하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라.

정부 눈치보지 말고 이일은 시민단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의 관리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쪽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미국 못 같까봐 걱정들 하지 말자.

우리나라도 일본의 오키나와 못지 않다는 것을 국민성으로 보여주자.

제 8 장 SOFA 관련 각종 통계 모음

제1절 시설과 구역 관련 통계

제2절 형사관할권 관련 통계

제3절 민사관련 통계

제4절 노무관련 통계

제5절 환경 관련 통계

제6절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 관련 통계

제7절 주한미군 지원 관련 통계

제1절 시설과 구역 관련 통계

1. 주한미군 공여재산 지역별 현황 (2000년 국감자료)

지역	공여재산 (평)	기지수	지역	공여재산 (평)	기지수
계	74,449,441	93	예천	179,928	1
서울	826,400	7	양평	5,324	1
대구	1,245,765	5	춘천	573,396	1
대전	23,940	1	동두천	12,288,027	6
부산	435,626	7	의정부	2,458,069	9
광주	378,661	1	원주	257,393	8
인천	158,531	2	용인	60,540	3
포천	5,497,515	5	하남	92,786	1
연천	9,895	1	성남	835,716	8
양주	3,417,894	2	평택	4,549,037	5
파주	28,353,639	14	수원	39,699	1
가평	2,470	1	칠곡/	834,014	1
영월	34,101	1	청주	5,202	1
천안	13,347	1	군산	3,140,132	2
화성	7,197,915	1	포항	2,432	1
김천	7,420	1	진해	116,006	1
제주	15,605	1	창원	1,289,087	1
사천	3,929	1			

*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는 93개기지, 7천4백45만평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동 재산들의 연간 사용료는 약 4천5백57억원으로 평가됨.

2. 연도별 공여재산 현황 (2000년 국감자료)

(단위 : 천평)

구분	계	전 용	지역 권	임시 / 기타
1967년	433,169	107,737	12,138	313,294
1970년	425,092	107,118	13,393	304,581
1980년	94,899	45,930	10,329	38,644
1990년	84,061	42,303	11,977	30,321
2000년	74,467	36,027	10,169	28,272

3. 미국 무상사용 국유재산 (2000년 국감자료)

재산명칭	규모	연간(99.7월-2000.6월) 사용료
주한미대사관 청사	대지 : 2,001평 건평 : 2,986평	22억9천8백78만원 *건물사용료는 제외
용산기지내	일반용역사무실(GSO)	대지 : 8,678평 7억8천8백92만원
	대사관직원 숙소	대지 : 64,964평 52억1천1백83만원
	Embassy Club	대지 : 6,965평 6억9천75만원

* 미국이 무상사용중인 우리 국유재산은 용산기지내 미대사관 직원숙소 등 3개 재산 및 미대사관 청사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동 재산들의 연간 사용료는 약 89억9천만원으로 평가됨.

4. 무상으로 항만을 이용한 실태

항 별	계	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항료
계	404,048	79,425	5,533	96,624	222,466
광 양	52,620	22,413	-	16,157	14,050
울 산	239,958	24,850	2,297	15,658	197,153
포 항	75,133	17,701	3,236	54,196	-
대 산	36,337	14,461	-	10,613	11,263

5. 반환 협상 진행중인 공여 현황 (1999년 8월)

원 소재지	이전지(면적)	이전 사유	추진 사항
서울용산 미8군 헬기장 (약9천2백평)	협상중	국립중앙박물관 부 지 확보 및 소음피 해에 따른 민원해소	1999년 4월, 2000년 상반기 이전 에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나 대 체부지 선정문제로 협상 난항
부산 미 하야리아 (약17만평)	협상중	부산시 도시발전 및 2002년 아시안 게임 개최 준비	1996년 17만평 중 5만평을 1999 년 6월까지, 나머지 12만평을 2000년 6월까지 이전 합의, 이후 이전비용, 공사 계약금 문제 등 으로 1998년 5월 협상 결렬 이 후 별 진전 없음
대구 미 캠프 워커 헬기장 및 A-3 비행장 활주로 (약2만4천평)	협상중단	대구시 균형발전 및 기지 소음피해에 따 른 민원해소	1996년 5월, 이전에 원칙적 합 의, 이후 이전부지, 이전비용, 공 사권계약 등으로 협상 난항, 1999년 7월 미군측에서 대구시 에 반환 거부 의사 공식통보, 협 상중단
의정부 미 캠프 홀링워터기지 (약1만6천7백평)	의정부시 용현동 (약1만3천평)	의정부역 광장확장 과 시 도시계획에 의한 이전협의	1994년 이후 5년째 이전협상중 이나 이전비용 문제 등으로 별 진전 없음
의정부 미 라파디아 기지 (약4만평)	협상중	의정부시 도시발전 과 기지소음피해 방 지, 교통 원활	

제2절 형사관할권 관련 통계

1. 196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범죄의 처리 결과 (국정감사자료)

연도	구분	계	한국 1차 관할			한국관할	미국관할
			계	행사	포기		
67년	건명	1,710	1,594	8	1,586	42	74
		2,029	1,910	16	1,894	42	77
68년	건명	1,751	1,556	14	1,542	88	107
		2,042	1,839	16	1,823	92	111
69년	건명	1,798	1,617	10	1,607	141	40
		2,003	1,814	11	1,803	145	44
70년	건명	1,763	1,641	10	1,631	83	39
		1,954	1,827	14	1,813	87	40
71년	건명	1,756	1,605	18	1,587	129	22
		2,239	2,086	29	2,057	131	22
72년	건명	2,030	1,866	21	1,845	148	16
		2,555	2,384	34	2,350	155	16
73년	건명	2,001	1,806	13	1,793	184	11
		2,462	2,237	24	2,213	214	11
74년	건명	2,003	1,786	20	1,766	205	12
		2,388	2,153	33	2,120	223	12
75년	건명	2,383	2,070	18	2,052	300	13
		2,708	2,366	29	2,337	329	13
76년	건명	2,261	1,953	14	1,949	286	12
		2,557	2,242	23	2,219	303	12
77년	건명	2,042	1,847	12	1,835	191	4
		2,351	2,140	15	2,125	207	4

연도	구분	계	한국 1차 관할			한국관할	미국관할
			계	행사	포기		
78년	건	2,225	2,021	19	2,002	204	0
	명	2,623	2,400	31	2,369	223	0
79년	건	1,905	1,464	12	1,452	158	283
	명	2,121	1,638	16	1,622	160	323
80년	건	1,679	0	0	0	1	1,678
	명	1,879	0	0	0	1	1,878
81년	건	1,783	1,588	4	1,584	193	2
	명	1,975	1,754	5	1,749	218	3
82년	건	1,853	1,659	9	1,650	194	0
	명	2,052	1,844	13	1,831	208	0
83년	건	2,079	1,756	6	1,750	322	1
	명	2,268	1,756	7	1,932	328	1
84년	건	1,853	1,541	7	1,534	312	0
	명	2,019	1,698	7	1,691	312	0
85년	건	1,709	1,398	7	1,391	311	0
	명	1,847	1,528	11	1,517	319	0
86년	건	1,459	1,205	7	1,198	254	0
	명	1,563	1,302	11	1,291	261	0
87년	건	1,409	1,171	5	1,166	261	0
	명	1,548	1,303	6	1,297	245	0
88년	건	1,510	1,266	6	1,260	243	1
	명	1,615	1,363	6	1,357	251	1
89년	건	1,332	1,117	10	1,107	211	4
	명	1,427	1,197	12	1,185	226	4
90년	건	1,180	974	9	965	202	4
	명	1,296	1,070	13	1,057	222	4
91년	건	1,206	1,041	14	1,027	163	2
	명	1,339	1,158	18	1,140	179	2
92년	건	754	642	10	632	112	0
	명	849	725	10	715	124	0
93년	건	802	624	13	611	178	0
	명	927	721	21	700	206	0
총계	건	46,236	38,808	296	38,522	5,116	2,325
	명	52,636	44,455	431	44,207	5,411	2,578

2. 한-미 SOFA 사건 처리현황

연도	구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행사(율)	한·미 협력사건 전체 범죄에 대한 행사(율)
		계	미군인	미군속등		
'85	건	1,577	1,315	262	6 (0.5)	265 (16.8)
	명	1,718	1,445	273	9 (0.6)	279 (16.2)
'86	건	1,325	1,130	195	6 (0.5)	201 (15.2)
	명	1,445	1,240	205	11 (0.9)	216 (14.9)
'87	건	1,286	1,074	212	5 (0.5)	217 (16.9)
	명	1,391	1,174	217	6 (0.5)	223 (16.0)
'88	건	1,428	1,188	240	6 (0.5)	246 (17.2)
	명	1,533	1,285	248	7 (0.5)	255 (16.6)
'89	건	1,298	1,085	213	8 (0.7)	217 (16.7)
	명	1,410	1,172	238	9 (0.8)	243 (17.2)
'90	건	1,092	942	150	8 (0.8)	154 (14.1)
	명	1,214	1,048	166	10 (1.0)	169 (13.9)
'91	건	1,034	932	102	14 (1.5)	116 (11.2)
	명	1,160	1,044	116	18 (1.7)	134 (11.6)
'92	건	754	642	112	10 (1.6)	122 (16.1)
	명	849	725	124	10 (1.4)	134 (15.7)
'93	건	802	624	178	13 (2.1)	192 (23.8)
	명	927	721	206	21 (2.9)	227 (24.5)
'94	건	896	711	185	18 (2.5)	203 (22.6)
	명	1,025	812	213	25 (3.1)	238 (23.2)
'95	건	903	694	209	41 (5.9)	250 (27.6)
	명	999	775	224	52 (6.7)	276 (27.6)
'96	건	702	526	176	18 (3.4)	194 (27.6)
	명	767	578	189	23 (4.0)	212 (27.6)
'97	건	689	543	146	31 (5.7)	177 (25.7)
	명	743	577	166	35 (6.1)	201 (27.1)
'98	건	660	518	142	20 (3.9)	162 (24.6)
	명	734	576	158	28 (4.9)	186 (25.3)
총계	건	14,446	11,924	2,522	204 (1.7)	2,716 (18.8)
	명	15,915	13,172	2,743	264 (2.0)	2,993 (18.8)

3. 한미행협 사건의 신분별 발생현황 (1982년 - 1992년)

연도/신분	계	증감률(%)	군인	군속	가족	초청계약자
1982	2,055 (100.0)	100.0	1,849 (90.0)	85 (4.1)	108 (5.3)	13 (0.6)
1983	2,209 (100.0)	107.5	1,903 (86.1)	126 (5.7)	163 (7.4)	17 (0.8)
1984	1,944 (100.0)	94.5	1,644 (84.6)	135 (6.9)	153 (7.9)	12 (0.6)
1985	1,718 (100.0)	83.6	1,445 (84.1)	133 (7.7)	132 (7.7)	8 (0.5)
1986	1,445 (100.0)	70.3	1,240 (85.8)	104 (7.2)	94 (6.5)	7 (0.5)
1987	1,391 (100.1)	67.7	1,174 (84.4)	121 (8.7)	89 (6.4)	7 (0.5)
1988	1,533 (100.0)	74.6	1,285 (83.8)	125 (8.2)	118 (7.7)	5 (0.3)
1989	1,410 (100.0)	68.6	1,172 (83.1)	119 (8.4)	116 (8.2)	3 (0.2)
1990	1,214 (100.0)	59.1	1,048 (86.3)	93 (7.7)	70 (5.8)	3 (0.2)
1991	1,160 (100.0)	56.4	1,044 (90.0)	64 (5.5)	50 (4.3)	2 (0.2)
1992	849 (100.0)	41.3	725 (85.4)	69 (8.1)	52 (6.1)	3 (0.4)

4. 연도별, 죄목별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연도별 죄명별	계	도로교통법 위 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법 위 반	절 도	기 타	
								연도별
1990	건	942	473 (50.2)	186 (19.7)	173 (18.4)	45 (4.8)	21 (2.2)	44 (4.7)
	명	1,048	473 (45.1)	186 (17.7)	255 (24.3)	30 (2.9)	30 (2.9)	50 (4.8)
1991	건	932	477 (51.2)	158 (17.0)	198 (21.3)	33 (3.5)	33 (3.5)	43 (4.6)
	명	1,044	478 (45.8)	159 (15.2)	280 (26.8)	52 (5.0)	52 (5.0)	49 (4.7)
1992	건	642	318 (49.5)	128 (19.9)	134 (20.9)	31 (4.8)	31 (4.8)	24 (3.7)
	명	725	318 (43.9)	128 (17.7)	183 (25.2)	44 (6.1)	44 (6.1)	34 (4.7)
1993	건	624	317 (50.8)	111 (17.8)	129 (20.7)	31 (5.0)	31 (5.0)	26 (4.2)
	명	721	317 (44.0)	111 (15.4)	193 (26.8)	49 (6.8)	49 (6.8)	37 (5.1)
1994	건	711	412 (57.9)	103 (14.5)	132 (18.6)	26 (3.7)	26 (3.7)	30 (4.2)
	명	812	412 (50.7)	103 (12.7)	194 (23.9)	43 (5.3)	43 (5.3)	49 (6.0)
1995	건	694	392 (56.5)	98 (14.1)	133 (19.2)	32 (4.6)	32 (4.6)	26 (3.7)
	명	775	392 (50.6)	98 (12.6)	196 (25.3)	46 (5.9)	46 (5.9)	30 (3.9)
1996	건	526	313 (59.5)	100 (19.0)	80 (15.2)	19 (3.6)	19 (3.6)	10 (1.9)
	명	578	313 (54.2)	100 (17.3)	106 (18.3)	37 (6.4)	37 (6.4)	12 (2.1)
1997	건	543	307 (56.5)	98 (18.0)	102 (18.8)	3 (0.6)	17 (3.1)	16 (2.9)
	명	577	307 (53.2)	98 (17.0)	127 (22.0)	3 (0.5)	23 (4.0)	19 (3.3)
1998	건	518	276 (53.3)	113 (21.8)	85 (16.4)	1 (0.2)	29 (5.6)	14 (2.7)
	명	576	276 (47.9)	113 (19.6)	125 (21.7)	1 (0.2)	42 (7.3)	19 (3.3)
1999	건	562	290 (51.6)	134 (23.9)	89 (15.8)	1 (0.2)	16 (2.8)	32 (5.7)
	명	612	290 (47.4)	134 (21.9)	119 (19.4)	1 (0.2)	18 (2.9)	50 (8.2)
2000 (1-7)	건	168	23 (13.7)	74 (44.0)	38 (22.6)	1 (0.6)	9 (5.4)	23 (13.7)
	명	199	23 (11.6)	74 (37.2)	63 (31.7)	1 (0.5)	13 (6.5)	25 (12.6)

5. 죄명별 재판권행사 현황

죄명별 연도	계	살인 폭행· 상해 치사	강도 상해	특수 강도	강간 치상	강제 추행 (치상)	폭력 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 (도주 차량)	사기	절도	공무 집행 방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관세 법 위반	기타
'81	건	4	1					1					2	
'81	명	5	1					1					3	
'82	건	9		1									8	
'82	명	13		1									12	
'83	건	6		1				1					4	
'83	명	7		2				1					4	
'84	건	5		2		1		1					1	
'84	명	5		2		1		1					1	
'85	건	6	1	2		1		1					1	
'85	명	9	1	3		2		1					2	
'86	건	6	2	1	1			2						
'86	명	11	3	2	4			2						
'87	건	5					1	2					2	
'87	명	6					1	3					2	
'88	건	6		1			1	3						
'88	명	7	1	2			1	3						
'89	건	8	2	2		1		1					1	1
'89	명	9	3	2		1		1					1	1
'90	건	8	1				2	3					2	
'90	명	10	1				3	3					3	

죄명별 연도	계	살인 (폭행· 상해 치사)	강도 상해	강도 (특수 강도)	강간 치상	강제 추행 (치상)	폭력 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 (도주 차량)	사기	절도	공무 집행 방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관세 법 위반	기타
'91	건	14		1		2	1	7			2	1		
'91	명	18		2		2	1	10			2	1		
'92	건	10	1	1		1		3	2			1	1	
'92	명	10	1	1		1		3	2			1	1	
'93	건	13		2	1			5	2			1	2	
'93	명	21		5	2			7	2			1	4	
'94	건	18			1			9	2	1	1		4	
'94	명	25			1			16	2	1	1		4	
'95	건	41			1	2		26	2	1	4	1	3	1
'95	명	52			1	2		36	2	1	4	2	3	1
'96	건	18	1	1			1	7			2	1	4	
'96	명	23	1	1			1	11			3	1	4	
'97	건	31		2		1	2	9	2		4		8	1 2
'97	명	35		2		1	2	10	2		6		8	2 2
'98	건	20	2	1	1		1	4	3		2		4	2
'98	명	28	2	3	1		1	7	3		5		4	2

6. 미군인 죄명별 재판권포기 현황

단위(건)

죄명별 연도별	도로교통 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 법위반	폭력행위 등치벌에 관한법률	관세법 위반	절도	기타	계	비고
98	272	73	81	1	28	6	461	518
99	291	104	88	1	15	12	511	562
2000(1-7)	17	69	38	1	8	7	140	168

7. 형사재판관할권 행사실적

연도	구분	발생			미군인범죄에 대한 행사(율)	미군인교통사범이외 범죄(율)	한미행협사건전체범죄에 대한 행사(율)
		계	미군인	미군속등			
98	건	660	518	142	20(3.9)	12(9.3)	162(24.6)
	명	734	576	158	28(4.9)	20(10.7)	186(25.3)
99	건	761	562	199	20(3.6)	18(13.0)	219(28.8)
	명	824	612	212	31(5.1)	29(15.4)	243(29.5)
2000(1-7)	건	268	168	100	12(17.1)	10(14.1)	112(41.8)
	명	307	199	108	13(6.5)	11(10.8)	121(39.4)

8. 한국정부의 미군인 재판권 행사사건 처리결과

(단위: 명)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구공판	15	7	14	14	25	11	15	14
구약식	1	3	7	10	27	12	15	6
기 타	2			1			5	8
계	18	10	21	25	52	23	35	28

9. 미군인 형사재판관할권 행사사건 처리결과 (기소, 불기소 인원)

연도	발생	행사	기소			불기소	수사중	
			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98	576	28	20	0	14	6	8	0
99	612	31	30	0	28	2	1	0
2000(1-7)	199	13	12	0	11	1	0	1

10. SOFA 1차 개정이전 재판권 행사

년 도	1차 재판권 범죄수	재판권 행사	재판권 행사율(%)
1981	1,588	4	0.3
1982	1,659	9	0.5
1983	1,756	6	0.3
1984	1,541	7	0.4
1985	1,398	7	0.5
1986	1,205	7	0.5
1987	1,171	5	0.4
1988	1,266	5	0.4
1989	1,117	10	0.9
1990	974	9	0.9
계	13,675	69	0.5

11. SOFA 1차 개정이후 재판권 행사

년 도	1차 재판권 범죄수	재판권 행사	재판권 행사율(%)
1991	1,041	14	1.3
1992	642	10	1.6
1993	624	13	2.1
1994	711	18	2.4
1995	903	41	5.9
1996	526	18	3.4
1997	543	31	5.7
계	4990	145	2.9

12. 천안 교도소 수감 현황

(1) 연도별 미군 수용자 현황

연도	97년 말	98년 말	99년(8월 31일까지)
수용인원	9명	9명	4명

(2) 연도별 미군 수용소 출소 사유별 현황

연도	출소사유	가석방	특별사면	형기종료	형집행정지	기 타
97년		2		1		
98년		1			4	
99년		0	0	0	0	

제3절 민사관련 통계

1. SOFA 체결이후 현재까지 모든 청구권의 사례

(접수건수 팔호안 : 신수 / 금액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접 수	처리				미제
			인용	기각	취하등	계	
95	건수	1,062(882)	884	25	8	917	145
	금액	12,622,228	2,798,473	1,284,004	135,957	9,560,134	3,062,094
96	건수	628(483)	479	18	18	515	113
	금액	7,578,950	2,036,876	781,647	2,021,549	6,961,438	617,212
97	건수	702(589)	448	55	4	507	195
	금액	19,071,506	1,068,459	6,996,243	157,596	8,533,760	10,537,745
98	건수	909(714)	567	45	21	633	276
	금액	99,218,293	2,817,635	7,562,478	632,237	95,461,239	3,757,053
99	건수	733(457)	443	123	3	569	164
	금액	8,293,044	1,450,301	1,572,411	80,378	6,065,766	2,227,277

2. SOFA 체결후 최근 5년간 위의 청구로 발생한 한미양국의 배상금액

(단위 : 천원)

년 도	총배상금액	미국측변상액	한국측분담액	비 고
1995년	3,793,348	2,839,279	954,069	
1996년	3,553,336	2,734,171	819,165	
1997년	2,620,037	1,950,974	669,063	
1998년	2,068,705	1,555,574	513,131	
1999년	2,763,426	2,070,532	692,894	

3. 미군 및 고용인원의 공무가 아닌 불법에 대한 청구권

(단위 : 천원)

년도	배상심의회 인용건수	배상신청액	배상심의회 인용금액	비 고
1995년	28	664,764	320,976	
1996년	20	624,191	292,105	
1997년	15	46,421	40,895	
1998년	17	422,342	216,127	
1999년	30	450,930	253,161	

4. 주한미군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신청 건수

년 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배상신청 건수	467	365	408	358	363	416	313

제4절 노무관련 통계

1. 미군에 노무관련으로 민원 제기한 사례

구분	제기인	건수
해고무효확인 소송	홍운선 외 12, 김양근	2
해고처분에 대한 소청위원회 요청	김미정, 최만영 외 3, 김기웅, 정인영	4

2. 노동부에 민원 제기한 사례

구분	제기인	건수
산재처리 요청	정종환, 김준규, 정준호, 황 태희, 김현무, 박창범, 김기태	7
해고처분 관련 진정	황운성, 김미정, 최만영, 이 창익, 이진섭, 임서규, 김기웅, 정민영	8
출입증 반환요청	두라코퍼레이션	1
근무장소 반환요청	하경자	1

제5절 환경 관련 통계

1. 환경관련 종합보고

(1) 소음측정 종합보고

단위 : dB(A)

측정장소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소음원	비고(순간최고소음)
의정부	74.0	78.4	헬기소음	81.4
춘천	71.1	82.0	헬기소음	89.3
인천	63.9	68.8	공장가동소음	68.8
평택	81.4	96.0	제트기소음	112.0
군산	83.4	94.0	제트기소음	107.0
대구	87.8	99.2	제트기소음	118.3
	81.2	87.4	헬기소음	88.2
부산	66.7	78.4	장비가동소음	78.6

(2) 환경소음 기준치

단위 : Leq(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추락지역(주거지구, 녹지지역, 주거전용지역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에서 50m 이내 지역)	50	40
	추락지역 중 주거지구 이외의 지구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45
도로변지역	일반지역과 동일	65	55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단위 : Leq dB(A)

소음도(dB)	소음수준	영향
60	탈수기 작동	식욕감퇴, 수면장애
70	육조 물 받는 소리	혈압상승, 집중력 저하
75	오토바이 소음	원활한 대화, 전화통화 불가능
80	고양이 울음	소화불량, 피로감, 불쾌감
85	피아노 소음	심장기능 저하, 평형력 교란
90	개짖는 소리	청력장애, 귀울림, 두통

(4)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보고

단위 : mg/Kg(A)

지역	유기물 함량	유류기중	비고
포항(1)	510	불검출	유기물 중 대부분 유류
포항(2)	250	불검출	유기물 중 대부분 유류
포항(3)	45	불검출	유기물
평택	110	불검출	유기물 중 3분의 2 유류
의정부	160	불검출	유기물 중 3분의 2 유류

2. 지역별 수질 보고서

(1) 원 주

① 지하수 수질 보고서

음용수 수질기준

항 목	수치	기준
수온이온농도(Ph)	6.9	6.5~85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0.8	기준없음
총 질 소	10.3	기준없음
총 인	0.005	기준없음
부 유 물 질	24	기준없음
계면활성제	0.01	0.5 이하
망 간	0.02	0.3
아 연	0.2	1

(2) 동두천

수질 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 2급, 농업용수 기준)

항 목	수치	기준
수온이온농도(Ph)	6.9	6.5~85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10.0	1 이하
총 질 소	4.9	1 이하
총 인	0.042	0.100이하
부 유 물 질	26	15 이하
계면활성제	0.03	0.5 이하
망 간		기준없음
아 연		기준없음

② 하천 수질 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 용수2급, 농업용수 기준)

항 목	수치	기준
수온이온농도(Ph)	6.9	6.5~85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7.5	1 이하
총 질 소	3.0	1 이하
총 인	0.034	0.100이하
부 유 물 질	26	15 이하
계면활성제	0.08	0.5 이하
망 간	0.28	기준없음
아 연	0.06	기준없음

(3) 의정부

수질 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 2급, 농업용수 기준)

항 목	수치	기준
수온이온농도(Ph)	6.9	6.5~85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5.5	1 이하
총 질 소	4.9	1 이하
총 인	0.011	0.100이하
부 유 물 질	24	15 이하
계면활성제	0.02	0.5 이하
망 간		
아 연		

(4) 인천

수질 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 2급, 농업용수 기준)

항 목	수치	기준
수온이온농도(Ph)	6.9	6.5~85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18.5	1 이하
총 질 소	3.7	1 이하
총 인	0.228	0.100이하
부 유 물 질	42	15 이하
계면활성제	0.25	0.5 이하
망 간	0.1	기준없음
아 연	0.04	기준없음

(5) 평택

수질 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 2급, 농업용수 기준)

항 목	수치	기준
수온이온농도(Ph)	6.9	6.5~85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14.5	1 이하
총 질 소	19.4	1 이하
총 인	0.092	0.100이하
부 유 물 질	144	15 이하
계면활성제	0.02	0.5 이하
망 간	0.07	기준없음
아 연	0.02	기준없음

제6절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 관련 통계

1. SOFA 대상자가 수입신고 관세납부 실적

(자료작성 : 관세청)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1~7월)
금액(US\$)	147	493	-	344
관세 등 총징수액(원)	30,910	174,560	-	70,790

2. 미군 물 사용 (상·하수도포함) 고지액 대비 납부액등 내역

년 도	물사용량 (톤)	고지액 (천원)	납부액 (천원)	국내	
				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계	23,176,790	6,879,557	6,733,439	8,565,862	1,895,084
98.1.1-98.12.31	8,932,668	2,368,091	2,368,091	8,565,862	1,895,084
98.1.1-99.12.31	9,609,061	2,963,611	2,963,611	-	-
2000.1.1-2000.6.30	4,635,061	1,547,855	1,410,737	-	-

3. 주한미군 전기요금 경감액 현황

연도별	사용량 (mwh)	전기요금 (억원)		
		산업용 (현행)	일반용	경감액
1980	321,678	73	164	91
1981	356,853	194	440	246
1982	379,117	265	464	199
1983	416,197	253	480	227
1984	432,555	263	500	237
1985	425,640	264	489	225
1986	438,439	252	484	232
1987	472,665	264	401	137
1988	500,357	248	386	138
1989	513,497	243	349	106
1990	535,238	261	324	63
1991	530,523	242	350	108
1992	513,643	247	363	116
1993	516,664	248	365	117
1994	535,745	262	383	121
1995	533,839	267	391	124
1996	548,512	284	408	124
1997	555,357	293	426	133
1998	555,357	327	468	141
1999	574,631	340	484	144
2000상반기	285,245	177	236	59
계	9,936,132	5,267	8,355	3,088

4. 주한미군 철도수송현황

(자료작성 : 재정경제부)

연도	여객수송		화물수송		사용액 합계(천원)	국내사용과 비교
	사용량(명)	사용액 (천원)	사용량(톤)	사용액 (천원)		
97	48,829	658,307	237,509	2,351,223	3,009,530	한국군과동 일적용
98	47,580	635,747	150,416	1,731,886	2,367,633	"
99	56,917	728,322	126,193	1,830,496	2,558,818	"
합계	153,326	2,022,376	514,118	5,913,605	7,935,981	"

5. 서울도시가스 미8군 공급내역

연도	분류	사용량	사용료	비 고
2000년 (8월까지)	취사	75,991	32,675,133	산업용적용
	난방	79,061	30,171,259	산업용적용
	소계	155,052	62,828,392	
1999년	취사	109,885	47,223,081	99년10월고지분부터산업용 적용
	난방	81,627	30,513,954	99년10월고지분부터산업용 적용
	소계	191,512	77,737,035	
1998년	취사	117,198	49,005,035	국내동일(일반난방용)
	난방	81,529	21,519,216	국내동일(일반난방용)
	소계	198,727	70,524,251	
1997년	취사	121,342	35,629,722	국내동일(일반난방용)
	난방	36,265	30,171,259	국내동일(일반난방용)
	소계	157,607	65,800,981	

6. 미공군 군사비행장 쓰레기 처리비용 현황

년 도	발생량(톤/년)	청소비용(원)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용과 비교	
			미군쓰레기 톤당처리비 (톤/원)	일반쓰레기 톤당처리비 (톤/원)
1997년	3,806	201,128,865	52,845	72,806
1998년	3,960	209,173,415	52,821	80,875
1999년	3,814	201,128,865	52,734	79,001

7. SOFA 차량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출처 : 서울시 2000.4 현재)

구분 계	구	부 과		징 수		비 교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총	계	11,881	480,630	500	20,240	
	종로	234	9,430	27	1,090	
	중	540	22,060	36	1,510	
	용산	9,860	398,900	381	15,390	
	성동	3	130	0	0	
	광진	8	320	0	0	
	동대문	0	0	0	0	
	중랑	17	660	0	0	
	성북	0	0	0	0	
	강북	27	1,080	1	40	
	도봉	3	120	0	0	
	노원	24	970	1	40	
	은평	3	120	0	0	
	서대문	4	160	0	0	
	마포	212	8,450	16	640	
	양천	0	0	0	0	
	강서	0	0	0	0	
	구로	0	0	0	0	
	금천	0	0	0	0	
	영등포	0	0	0	0	
계	동작	68	2,810	2	80	
	관악	0	0	0	0	
	서초	420	17,070	20	810	
	강남	456	18,270	15	600	
	송파	1	40	1	40	
	강동	1	40	0	0	

8. 공공요금 종류별 적용현황

공공요금	종별	정부기관	한국군	주한미군
상수도요금	①업무용②가정용 ③육탕용④영업용	업무용	업무용	업무용
하수도요금	①공중용②공공용 ③산업용④일반용	공공용	공공용	공공용
전기요금	①농사용②산업용 ③교육용④일반용 ⑤가정용	일반용	군시설에 따라 적용(주로일반용)	산업용
철도운임	①군임율 ②일반임율	일반임율	군임용	군임용
가스요금	①산업용②일반용 ③주택용④영업용	일반용	일반용	산업용
쓰레기 수거료		청소대행업체 와의계약	주로자체해결	청소대행업체 와의계약

9. SOFA 제9조제6항 위반 건수 (자료출처 : 관세청)

(1) 1995년 위반 건수

위반종류별	건수	금액(천원)	처리결과		
			구속	통고처분	기타
P.X 밀수	92	307,738	1	79	12
APO 밀수	27	97,813	1	4	22
시중단속	11	16,087		4	7
계	130	421,638	2	87	41

(2) 1996년 위반 건수

위반종류별	건수	금액(천원)	처리결과		
			구속	통고처분	기타
P.X 밀수	85	350,408	3	77	5
APO 밀수	4	22,187		1	3
시중단속	28	162,264	3	21	4
계	117	534,859	6	99	12

(3) 1997년 위반 건수

위반종류별	건수	금액(천원)	처리결과		
			구속	통고처분	기타
P.X 밀수	31	644,438	2	23	6
APO 밀수	19	61,047		5	14
시중단속	184	158,940	1	182	1
계	234	864,425	3	210	21

(4) 1998년 위반 건수

위반종류	건수	금액	처리결과		
			구속	통고처분	기타
P.X 밀수	16	43,368		13	3
APO 밀수	10	262,716	1	8	1
시중단속	96	1,494,887	4	90	2
계	122	1,800,971	5	111	6

(5) 1999년 위반 건수

위반종류	건수	금액	처리결과		
			구속	통고처분	기타
P.X 밀수	42	426,764	4	22	16
APO 밀수	14	103,528		8	6
시중단속	55	32,784		54	1
계	111	563,076	4	84	23

(6) 2000. 7월말 위반 건수

위반종류	건수	금액	처리결과		
			구속	통고처분	기타
P.X 밀수	19	458,154	3	10	6
APO 밀수	6	33,404		5	1
시중단속	49	316,755	2	46	1
계	74	808,313	5	61	8

10. SOFA제13조제13항 위반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건

(자료출처 : 관세청)

구분	위반종류별(건수)		
	P.X밀수	시중단속	계
'1995년	92	11	103
'1996년	85	28	113
'1997년	31	184	215
'1998년	16	96	112
'1999년	42	55	97
'2000년7월	19	49	68
계	285	423	708

11. 외인임대주택현황 및 세액 감면내역

(자료제공 : 대한주택공사)

(금액단위 : 원)

단지명	임대호수	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계	1,715		199,381,840	32,835,204
한남외인 (80.5입주)	684	소계	126,620,820	공사 소유의 토지가 아님 (소유자 : 국방부)
		1995	37,907,960	
		1996	16,560,400	
		1997	17,180,000	
		1998	20,613,540	
		1999	17,179,460	
용산외인 (85.11입주)	300	소계		공사 소유의 토지가 아님 (소유자 : 국방부)
		1995		
		1996		
		1997		
		1998		
		1999		
오산외인 (79.12입주)	201	소계	22,464,800	
		1995	2,060,630	
		1996	4,727,900	
		1997	3,859,360	
		1998	3,955,800	
		1999	3,905,830	
송탄외인 (86.6입주)	330	소계	23,080,380	32,835,204 6,824,247 8,374,530 5,842,747 5,842,740 5,950,940
		1995	3,301,260	
		1996	3,675,600	
		1997	3,902,330	
		1998	4,093,180	
		1999	4,022,010	
대구외인 (81.9입주)	200	소계	27,215,840	공사 소유의 토지가 아님(소유자 : 대구시)
		1995	4,915,180	
		1996	4,340,130	
		1997	4,265,630	
		1998	4,628,820	
		1999	4,502,760	
	2000	4,563,320		

제7절 주한미군 지원 관련 통계

1. SOFA 체결이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자료작성 : 국방부)

(단위 : 억불)

년 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총 주둔비용	25.7	24.4	25.8	27.6	30.0	34.0	34.3	35.5	31.1
미국인 인건비	15.0	14.2	14.9	17.0	17.2	19.3	20.0	20.9	16.3
NPSC	10.7	10.2	10.9	10.6	12.8	14.7	14.3	14.6	14.8

※ NPSC : Non Personnel Stationing Cost
(미국인 군인·군속의 인건비외 주둔비용)

2. SOFA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 분담

- 2000년 분담규모 : 약 3.9억불

	현금지원		현물지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CDIP	군수지원
2000년	2,325억원	0.878억불	0.439억불	499억원 및 0.232억불

* 인건비 :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부담

- * 군사건설비 : 병영막사, 창고, 식당, 급수·환경시설 등 비전투시설
- *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해군부두, 비행장 유도로 등 전투시설
- * 군수지원 : 차량구매, 항공기 정비 등 군수지원

3.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경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 내역

(단위 : 만불)

년 도	지원내역				합계
	인건비	군사건설	CDIP	군수지원	
1991년	4,300	3,000	4,000	3,700	1.50억불
1992년	5,000	2,500	5,000	4,700	1.80억불
1993년	8,000	4,000	5,000	5,000	2.20억불
1994년	12,000	3,800	5,000	5,200	2.60억불
1995년	14,000	4,300	5,700	6,000	3.00억불
1996년	16,500	5,500	5,000	6,000	3.30억불
1997년	19,100	6,700	4,500	6,000	3.63억불
1998년	2,033억원	7,500	4,000	1,980+423억원	2,456억원 +13,480 (3.10억불)
1999년	2,120억원	8,000	4,000	2,120+455억원	2,575억원 +14,120 (3.33억불)
2000년	2,326억원	8,780	4,390	2,320+499억원	2,825억원 +15,490 (3.91억불)

4. 한국·독일·일본의 미군주둔 경비 부담액

(단위 : 백만불)

구분		직접지원	간접지원	총액
한국	1995년	294.37	1,429.15	1,723.52
	1996년	306.70	-	-
	1997년	350.40	385.84	736.24
	1998년	349.10	402.21	751.31
일본	1995년	3,257.10	795.14	4,052.24
	1996년	3,606.59	987.03	4,584.61
	1997년	2,944.12	781.02	3,725.13
	1998년	2,881.26	1,132.10	4,013.36
독일	1995년	60.22	1,073.29	1,133.51
	1996년	55.98	1,246.53	1,302.52
	1997년	16.91	1,207.88	1,224.80
	1998년	23.29	933.68	956.97

* 출처 : 미 국방부 작성 대의회 방위분담 보고서(1997, 1998, 1999, 2000)

* 직접지원 : 부동산 임대금(일본), 인건비, 시설비 등

* 간접지원 : 부동산 지원(한국), 세금면제 등

5. 1998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현황

(단위 : 만 달러)

구분		내역	1997	1998	비교(1997대비)
직접지원	현금지원	방위비분담	36,300	31,422	-4,878
		JUSMAG-K 지원	147	67	-80
		소계	36,447	31,489	-4,958
	운영유지	KATUSA/미8군 한국군지원단 운영	769	518	-251
		증원군 관리대 운영	38	30	-8
		미군시설 경계지원	135	107	-28
		공무피해보상	38	49	+11
		소계	980	704	-276
	군수지원	WRSA 탄약 저장시설·유지	1,253	1,870	+617
		MAGNUM탄약고 시설 개선	792	132	-660
		소계	2,045	2,002	-43
	시설부지 지원	미군 점유 사유지 구매	210	236	+26
		미군 점유 사유지 사용료	132	118	-14
		소계	342	354	+12
		합계	39,814	34,549	-5,265
간접지원		훈련장 등 시설사용	2,650	1,505	-1,145
		조세 등 감면	15,378	14,588	-790
		인력지원	5,993	6,769	+776
		합계	24,021	22,862	-1,159
부동산(토지)지원		전용지역, 지역권 지역 임대료	155,700	105,800	-49,900
	총계		219,535	163,211	-56,324

6. '98~'99 주한미군 지원 상세 현황(자료출처 : 국방부)
(단위 : 만불)

구분	내역	98	99	차이	
직접지원	방위비 분담금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14,533	15,797	+1,264
		군사건설(ROKFC)	7,500	8,000	+500
		CDIP	4,000	4,000	
		군수지원	5,004	5,510	+506
		소계	31,037	33,307	+2,270
	JUSMAG K 지원		67	71	+4
	시설부지 지원	공여지내 사유지 구매및 보상	236	270	+34
		한남동 관사시설부지 47보급소(대구) 부지 사용료	118	84	-34
	공무피해보상	주한미군의 대미 피해보상비	49	58	+9
	합 계		31,507	33,790	+2,283
간접지원	조세 등 감면		14,629	16,274	-1,355
	KATUSA 지원		6,855	9,088	+2,233
	부동산 지원		105,800	38,311	-67,489
	합 계		127,284	60,673	-66,611
총 계		158,791	94,463	-64,328	

* 적용환율 : 1998 시중평균환율 1,398.88원/\$
(단,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적용된 평균 환율은 1,325원/\$)